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6월 23일
2. 회부일자 : 2025년 6월 30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국회(임시회)

☐ 제1차위원회(2025. 6. 3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

☐ 제2차위원회(2025. 7. 1.)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계속)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025. 7. 2.)

- 상정,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보고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22건) 종합조정

□ 제2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025. 7. 4.)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22건) 종합조정(계속)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수정 의결

□ 제3차위원회(2025. 7. 4.)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 수정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토부장관 박 상 우)

- 2025년도 제2회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금번 추경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은 6,042억원이 증가한 36조 6,649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먼저,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안심환매 사업에 3,000억원, PF 특별보증에 2,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비에 59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 3천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용자 3,208억원을 증액하였음.

다만, 사업시행자의 용자소요를 감안하여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3개 사업에서 2,765억원을 감액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 수석전문위원 이 신 우)

1. 개 관

가. 추경안의 주요 내용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소비 및 투자 촉진과 민생 안정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경기를 진작시키고 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세입경정 10.3조원을 포함한 총 30.5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이에 따라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① 경기 진작, ② 민생 안정, ③ 세입경정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경기 진작’ 분야는 총 15.2조원 규모로, 소비여력 보장에 11.3조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7조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1.2조원이 편성되었음.

‘민생 안정’ 분야는 총 5.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4조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6조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에 0.7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1.3조원을 투자할 예정임.

‘세입경정’은 내수회복 지연과 美관세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실질성장률 2.2%)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국은행 0.8%)되는 등 국세수입 여건 악화로 인해 국세수입 예산을

10.3조원 감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주요내용]

(단위: 조원)

기본방향	총 30.5조원 (세출 20.2조원 + 세입 10.3조원)	
	◇ ① 경기 진작(소비·투자 촉진)과 ②민생 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주요내용	① 경기 진작	15.2
	▶ 소비여력 보강	11.3
	▶ 건설경기 활성화	2.7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
	② 민생 안정	5.0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
	▶ 고용안전망 강화	1.6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
	▶ 지방재정 보강 등	1.3
	③ 세입경정	10.3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나. 소관별, 회계·기금별 구성

- 이번 추경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부처별 구성을 살펴보면, 총지출 기준으로 13개 상임위원회 19개 부처 2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총지출 기준으로 세출·지출 증액 사업은 12개 상임위원회 17개 부처의 1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10조 9,513억원(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2,967억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2조 354억원, 고용노동부 1조 5,929억원, 기획재정부 1조 3,199억원, 금융위원회 1조 1,004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 405억원 순으로 증액됨.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소관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액규모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15	93,153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3	1,100,354
기획재정부위원회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1	2,570
		공공자금관리기금	2	1,272,874
		국유재산관리기금	4	44,429
		소 계	7	1,319,873
교육위원회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	223,536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8	191,75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13,960
		소계	11	205,711
국방위원회	국방부	일반회계	7	222,760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3	10,298,81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652,500
		소계	5	10,951,311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액규모
	소방청	일반회계	1	6,649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2	115,000
		국민체육진흥기금	1	26,000
		문화예술진흥기금	1	1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1	23,579
		영화발전기금	1	27,100
		소계	6	201,67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	118,75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25,0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	22,4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	20,000
		소계	6	186,155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	41,064
		교통시설특별회계	3	42,583
		소계	6	83,64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5	28,0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3,665
		전력산업기반기금	6	463,942
		소계	12	495,613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2	78,000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3	65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	312,530
		소계	8	1,040,53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9	177,44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10,349
		국민건강증진기금	2	7,955
		응급의료기금	1	1,762
		소계	13	197,506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일반회계	3	63,900
		환경개선특별회계	5	172,79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7,000
		소계	9	243,697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5	221,67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45,049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액규모
		고용보험기금	2	1,303,000
		임금채권보장기금	1	8,12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	1	15,000
		소계	10	1,592,85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6	516,310
		교통시설특별회계	17	623,48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	15,000
		주택도시기금	4	880,645
		소계	35	2,035,440
12개 상임위	17개 부처	합 계	159	20,200,470

주) 동일 세부사업 내 증액·감액이 혼재한 경우 각각을 증액·감액으로 집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작성

- 총지출 기준으로 세출·지출 감액 사업은 11개 상임위원회 13개 부처 5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2조 6,569억원(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1조 2,449억원, 환경부 △5,473억원, 보건복지부 △2,278억원 등의 순으로 감액됨.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지출 감액 사업의 소관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세부사업수	감액규모
정부위원회	국가보훈부	1	△9,72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4	△87,000
교육위원회	교육부	10	△2,656,902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8	△60,506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세부사업수	감액규모
	통일부	3	△170,000
국방위원회	국방부	2	△80,500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	△16,09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4	△112,38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1	△50,00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4	△227,757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4	△547,250
	고용노동부	1	△9,18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11	△1,244,863
11개 상임위	13개 부처	54	△5,272,166

주) 동일 세부사업 내 증액·감액이 혼재한 경우 각각을 증액·감액으로 집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작성

□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 기준 증액 내역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예산에서 15조 1,086억원, 기금에서 5조 919억원이 증액되어 총 20조 2,005억원이 증액되었음.

예산 중에서는 일반회계가 13조 1,138억원(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2,967억원)이 증액되어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275억원(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660억원(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1,259억원) 순으로 증액됨.

기금 중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이 1조 3,030억원(구직급여 1조 2,929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 2,729억원(지방채 인수 1조원), 주택도시기금 8,806억원(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4,000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500억원(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4,000억원) 순으로 증액됨.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지출 증액 사업의 회계·기금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감규모	주요 증액내용
예산	일반회계	69	13,113,812	·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2,967억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원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3,000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3,0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6	159,819	· 수리시설개보수 816억원 · 국가어항 271억원 · 농촌용수개발 222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20	666,068	·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1,259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1,000억원 ·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1,00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	45,049	· 진폐위로금 451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5	172,797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610억원 · 하수처리장 설치 576억원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30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17	727,474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000억원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525억원
	고등·평생교육지 원 특별회계	5	223,536	· 국립대학 시설확충 1,957억원 ·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200억원
	소 계	123	15,108,555	
기금	복권기금	1	2,570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2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2	1,272,874	· 지방채인수(융자) 1조원 ·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2,729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4	44,429	·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196억원 ·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99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	26,000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6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	10,000	· 문화예술향유 지원 100억원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감규모	주요 증액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1	23,579	· 국내관광 역량 강화 236억원
영화발전기금	1	27,100	· 영화정책지원 271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	22,400	· 축사시설현대화(용자) 224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	20,000	·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2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6	463,942	· 전력효율향상 3,261억원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1,000억원 ·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150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650,000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4,0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2,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 기금	3	312,530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813억원 · 소상공인재기지원 263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	7,955	· 모자보건사업 54억원
응급의료기금	1	1,762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8억원
고용보험기금	2	1,303,000	· 구직급여 1조 2,929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	8,129	· 체불청산 지원 용자(용자) 81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15,000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50억원
주택도시기금	4	880,645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4,000억원 · 전세임대(용자) 3,208억원
소 계	36	5,091,915	
합 계	159	20,200,470	

주) 동일 세부사업 내 증액·감액이 혼재한 경우 각각을 증액·감액으로 집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제작됨

□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 기준 감액내역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예산에서 △4조 6,044억원, 기금에서 △6,678억원 등 총 △5조 2,722억원이 감액됨.

예산 중에서는 일반회계가 △2조 4,158억원(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감액되어 가장 크게 감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9,684억원(가덕도신공항건설 △5,224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6,568억원(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400억원),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 △5,303억원(무공해차 보급사업 △4,673억원) 등의 순
 으로 감액됨.

기금 중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이 △2,765억원(행복주택(용자) △
 1,24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되었고, 다음으로는 남북협력기금 △
 1,700억원(민생협력지원 △878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843억원(스포
 츠산업 금융지원(용자) △843억원) 순으로 감액됨.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지출 감액 사업의 회계·기금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감규모	주요 감액내용
예산	일반회계	25	△2,415,834	·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236억원 · 기초연금지급 △637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8	△968,375	· 가덕도신공항건설 △5,224억원 ·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1,82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	2	△530,250	· 무공해차 보급사업 △4,673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2	△17,000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100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16,092	·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161억원
	고등·평생교육자원특별 회계	4	△656,800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400억원
	소 계	42	△4,604,351	
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2	△40,000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용자) △320억원
	기후대응기금	1	△17,000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17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	△30,000	· 비축토지매입 △300억원
	남북협력기금	3	△170,000	· 민생협력지원 △878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	△84,327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용자) △843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	△50,000	· 소상공인지원(용자) △500억원
	주택도시기금	3	△276,488	· 행복주택(용자) △1,244억원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감규모	주요 감액내용
소 계	12	△667,815	
합 계	54	△5,272,166	

주) 동일 세부사업 내 증액·감액이 혼재한 경우 각각을 증액·감액으로 집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작성

□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과 함께 총 22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 중에서 「국가재정법」 제70조1)에 따라 주요항목(프로그램)의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기존계획의 20%(금융성 기금은 30%)를 초과하여 의무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남북협력기금·영화발전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주택도시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9개임.

그 밖에 대외경제협력기금·기후대응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고용보험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등 13개 기금은 자체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제출되었음.

1)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2. 주요 검토사항

가. 추경안의 편성 요건

- 장기화된 내수 부진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제고,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 경제는 최근 실물경제 전반의 부진과 대외 여건 악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

OECD가 2024년 말 2.1%로 전망하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5년 3월 1.5%로 낮춘 데 이어, 6월에는 1.0%로 재차 하향하였고, IMF,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전망치를 1.0%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음.

[2025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내역]

(단위: %, %p)

구분		조정 전(A)	1차 조정(B)	2차 조정(C)	조정치(C-A)
국제 기구	OECD	2.1 (2024.12.)	1.5 (2025.3.)	1.0 (2025.6.)	△1.1
	IMF	2.2 (2024.10.)	2.0 (2025.1.)	1.0 (2025.4.)	△1.2
국내 기관	한국은행	1.9 (2024.11.)	1.5 (2025.2.)	0.8 (2025.5.)	△1.1
	KDI	2.0 (2024.11.)	1.6 (2025.2.)	0.8 (2025.6.)	△1.2

자료: 각 기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로 한국의 분기별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4년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2분기 $\Delta 0.2\%$, 3분기 0.1%, 4분기 0.1%, 2025년 1분기 $\Delta 0.2\%$ 로 나타나며, 4분기 연속 0.0% 내외의 저성장 또는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정책 시행과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미국이 2025년 4월 관세정책을 발표한 이후, 대미 수출액은 감소세(4월 $\Delta 7.0\%$, 5월 $\Delta 8.1\%$)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무역 등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 증가하였으나 1분위 소득은 $\Delta 1.5\%$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 증가율(4.2%)은 전체 평균(2.2%)보다 높은 상황임.

[2025년도 1/4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가계지출]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소 득	1,140	$\Delta 1.5$	2,759	1.9	4,391	2.9	6,578	5.8	11,884	5.6	5,351	4.5
가계지출	1,578	4.2	2,415	$\Delta 1.3$	3,519	3.9	4,941	1.3	7,908	2.8	4,072	2.2

자료: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와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체 자영업자 수는 2022년 2분기 4.8만명에서 2024년 말 14.8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0.69%에서 2024년 1.67%로 증가하였음.

다만, 이와 같은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심리지수(ESI),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심리지수(CBSI)가 모두 상승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경제심리 관련 지수 월별 변동 추이]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경제심리지수	91.8	93.7	92.5	94.8	94.1	95.0	96.3	94.5	94.0	92.8	93.0	83.3	86.7	90.2	87.2	87.5	92.2
소비자심리지수	101.6	101.9	100.7	100.7	98.4	100.9	103.7	100.8	100.0	101.8	100.7	88.2	91.2	95.2	93.4	93.8	101.8
기업심리지수	89.8	88.2	89.8	91.7	93.3	96.0	95.5	92.8	91.6	92.5	91.8	87.3	85.9	85.3	86.7	87.9	90.7

자료: 한국은행 발표자료로 재작성

□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소비 및 투자 부진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이번 추경안에 다수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매칭 지방비 적기 확보를 위한 조속한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지방재정 여력 등을 고려하여 다층화된 국비지원을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수도권에 5%, 비수도권에 8%의 국비지원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수도권 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 더 높은 금액이 차등지원될 예정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지원수준을 다층화하여 재정부담이 재정력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 사업은 지방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적시 지원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신속한 민생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부의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공사 구간 중 일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여 공사를 위해 군산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사업은 금융 조달 및 공사비 현실화 방안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전세임대’ 사업은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비(非)아파트형 전세임대의 청약률이 48.6%로 높지 않은 상황임.

셋째, 기존 사업 및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 간에 유사성이 있거나,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기존 ‘지역특화 제

조데이터 활성화' 사업과 목적, 내용 및 추진방식 등이 유사하므로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에서 이미 산업 데이터, 글로벌 공급망 규제 관련 AI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고효율 가전 지원'사업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협업할 필요가 있음.

나. 재정총량 변동 및 재정건전성

- 이번 추경안의 총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0.4조원 감소한 642.4조원이며, 총지출은 제1회 추경 대비 14.9조원이 증가한 702.0조원임.

총지출은 증가하고 총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제1회 추경에 비해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제1회 추경 대비 19.8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59.6조원 적자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적자규모는 △25.3조원 확대될 전망이며, GDP 대비 비율은 △2.2%로서 제1회 추경 대비 △1.0%p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110.4조원 적자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적자규모는 △24.0조원 확대될 전망이며, GDP 대비 비율은 △4.2%로 △0.9%p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국가채무는 1,300.6조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9.8조원 증가하고, 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제1회 추경 대비 0.6%p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대비 (B-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총수입 (증가율)	612.2 (△2.2)	651.6 (6.4)	652.8 (6.6)	642.4 (4.9)	△10.4
◇ 총지출 (증가율)	656.6 (2.8)	673.3 (2.5)	687.1 (4.6)	702.0 (6.9)	14.9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44.4 (△1.8)	△21.7 (△0.8)	△34.3 (△1.3)	△59.6 (△2.2)	△25.3 (△1.0%p)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91.6 (△3.6)	△73.9 (△2.8)	△86.4 (△3.3)	△110.4 (△4.2)	△24.0 (△0.9%p)
◇ 국가채무 (GDP 대비, %)	1,195.8 (47.4)	1,273.3 (48.1)	1,280.8 (48.4)	1,300.6 (49.0)	19.8 (+0.6%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 총수입의 기반 확대를 위해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하는데, 기획재정부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세감면액은 71.4조원으로 전망되고,³⁾ 2025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8.0조원으로 2024년 대비 6.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3~2025년 국세감면율을 보면, 2023년 실적은 15.8%로 법정한도 14.3%를 1.5%p 초과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법정한도 대비 각각 1.7%p, 0.7%p 초과하여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6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LPG·가공과일 등 할당 관세 6개월 연장하는 등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시행하면서 세수부족을 이유로 세입경정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인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은 36조 9,999억원 수준임.

3) 2024년 확정적인 국세감면액은 2025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임.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 국세감면액	697,664	100.0	714,305	100.0	780,178	100.0
구조적 지출	152,630	21.9	168,204	23.5	179,044	22.9
잠재적 관리대상	210,961	30.2	216,894	30.4	228,543	29.3
적극적 관리대상	330,442	47.4	326,690	45.7	369,999	47.4
경과규정	3,631	0.5	2,517	0.4	2,591	0.3

주) 구조적 지출: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이 없는 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폐지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여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

또한 2025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은 65건이며, 2025년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총 16.9조원 규모로, 이 중 61건은 적극적 관리대상, 나머지 4건은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2025년도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각각 15.1조원, 1.8조원 수준임.⁴⁾

- 다음으로,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위탁 실적 제고 및 징수를 포기하는 정리보류를 줄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의 정리중 체납액은 2024년말 기준 19조 3,562억원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정리보류액은 2024년 8조 7,993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36조 8,219억원에 이르고 있음.

4) 국회예산정책처, 「2025대한민국조세」, 2025.3.28., 592p.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수납액 및 체납정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징수결정액		2,856,578	3,355,359	3,729,198	3,445,554	3,486,236
수납액		2,408,798	2,871,869	3,194,457	2,824,493	2,789,419
정리 대상 체납액 (A)	합계	271,866	279,128	329,848	382,724	402,962
	당해연도 발생액	192,364	196,711	229,935	243,089	242,112
	전년도 이월액	92,844	95,284	114,536	155,673	177,491
	결정취소· 결정감	13,342	12,867	14,623	16,038	16,641
체납 정리 현황 (B)	합계	176,582	164,592	174,175	205,233	209,400
	현금정리	105,999	103,003	114,082	117,272	121,407
	정리보류	70,583	61,589	60,093	87,961	87,993
정리중체납(A-B)		95,284	114,536	155,673	177,491	193,562

자료: 국세청

또한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의 징수율은 0.49~0.76% 수준으로 1.0%를 넘지 못하고 있음.

국세청은 어려운 국세수입 여건 속에서 납세자의 체납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위탁 실적 제고 및 징수를 포기하는 정리보류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세입여건의 악화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등으로 인해 향후 빠른 증가가 전망되므로,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60.1조 원 증가한 1,217.3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50.7%이며, 2019년 이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⁵⁾

[연도별 일반정부 부채(D2)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810.7	39.7	945.1	45.9	1,066.2	48.0	1,157.2	49.8	1,217.3	50.7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4.12.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3년 50.7%로 프랑스(109.9%), 일본(249.7%), 영국(100.0%), 미국(118.7%)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2019년 39.7%에서 2023년 50.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주요 국가의 2019~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단위: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2019	2020	2021	2022	2023
호주	46.7	57.0	55.4	50.3	49.0
캐나다	90.2	118.2	113.5	107.4	107.5
핀란드	65.2	75.3	73.1	73.9	77.0
프랑스	97.6	114.6	112.6	111.1	109.9
독일	58.6	67.9	67.9	64.8	62.7
이탈리아	133.6	154.1	145.5	138.1	134.6

5) 일반정부 부채비율 증감(%p): (2019)1.9 (2020)6.2 (2021)2.1 (2022)1.8 (2023)0.9

(단위: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본	236.4	258.4	253.7	256.3	249.7
한국	39.7	45.9	48.0	49.8	50.7
포르투갈	116.6	134.9	124.5	112.4	99.1
스페인	97.6	119.2	115.6	109.4	105.0
스웨덴	35.7	40.3	36.8	33.8	36.4
영국	85.7	105.8	105.1	99.6	100.0
미국	108.0	131.8	124.5	118.6	118.7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4.12.

특히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50.7%에서 2030년 59.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요 국가의 2023~2030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스웨덴	31.5	32.6	33.7	33.9	33.2	32.6	31.8	30.9
미국	119.0	120.8	122.5	123.7	124.9	125.9	127.0	128.2
독일	62.9	63.9	65.4	67.0	68.5	70.4	72.5	74.9
이탈리아	134.6	135.3	137.3	138.5	138.6	138.2	137.7	137.7
한국	50.7	52.5	54.5	55.7	56.6	57.5	58.4	59.2
캐나다	107.7	110.8	112.5	110.9	109.4	107.9	106.2	104.1
프랑스	109.7	113.1	116.3	119.1	121.6	123.9	126.1	128.4
일본	240.0	236.7	234.9	233.7	232.1	231.2	231.1	231.7
영국	100.4	101.2	103.9	105.4	106.1	106.5	106.5	106.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4.),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percent of GDP

다. 세입경정

-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은 국세수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세수입 예산을 △10.3조원 감액편성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5개 세목이 감액되었고, 상속·증여세 1개 세목이 증액되었음.

법인세는 2024년 법인실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⁶⁾되어 법인세 신고세액이 당초 예상보다 하회하였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전망과 원천징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제1회 추경 대비 4.7조원을 감액하였음.

부가가치세는 2024년 12월 이후 정치적 불안정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2025년 부가가치세 실적 부진 등을 반영하여 4.3조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⁷⁾ 등으로 1.1조원,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및 발전연료 탄력세율 인하조치⁸⁾로 0.9조원 감액하였음.

한편 정부는 세입경정을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세목 중 소득세는 4·5월 실적을 고려할 때 예산 수준(126.8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증권거래세는 6월 주식시장 호조세가 상당하여 하반기 세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관세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수입액 전망이 불확실하여 세입경정을 실시하지 않았음.

6) 2024년 코스피 + 코스닥 영업이익의 증가율: (상반기) 232% → (하반기) 86%

7)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1~4월) △15/△23 → (5~8월) △10/△15

8) 발전연료/자동차 탄력세율(%): (연중) △15/△30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국세수입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실적	2025년			제1회 추경 대비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국 세	3,365,324	3,824,296	3,824,296	3,720,850	△103,446	△2.7
○ 소 득 세	1,174,180	1,268,192	1,268,192	1,268,192	-	-
· 종합소득세	195,265	220,582	220,582	220,582	-	-
· 양도소득세	166,852	194,116	194,116	194,116	-	-
· 근로소득세	610,491	647,310	647,310	647,310	-	-
○ 법 인 세	625,113	882,544	882,544	835,671	△46,872	△5.3
○ 상속증여세	152,981	145,059	145,059	154,437	9,378	6.5
○ 부가가치세	822,358	876,388	876,388	833,292	△43,095	△4.3
○ 개별소비세	86,566	96,663	96,663	87,479	△9,184	△9.5
○ 증권거래세	47,602	38,454	38,454	38,454	-	-
○ 인 지 세	8,460	8,836	8,836	8,836	-	-
○ 과년도수입	65,334	65,156	65,156	65,156	-	-
○ 교통에너지환경세	113,891	151,048	151,048	140,012	△11,036	△7.3
○ 관 세	69,723	84,093	84,093	84,093	-	-
○ 교 육 세	53,738	60,402	60,402	57,765	△2,637	△4.4
○ 종합부동산세	41,847	41,215	41,215	41,215	-	-
○ 주 세	33,282	32,093	32,093	32,093	-	-
○ 농 특 세	70,249	74,153	74,153	74,153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 이와 관련해, 경기 부진 등으로 둔화된 경제 성장을 감안하면 세입경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국채 추가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당해연도 지출을 위해 타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충당하거나 집행예산 부족으로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

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⁹⁾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됨에도 전년 대비 15.1조원(4.1%) 증가한 382.4조원의 국세수입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과다편성 가능성이 크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수납현황 및 내년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현실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¹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에도 국세수입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포함하여 편성하였는바,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2025.5월까지의 세수진도율, 내수회복 지연과 미국 관세정책과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Delta 10.3$ 조원)과 세출확대(20.2조원)로 19.8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 2025년 국가채무는 1,300.6조원(GDP 대비 49.0%)으로 증가하고 2028에는 1,570.1조원(52.5%)까지 증가할 전망이므로, 국가채무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방

9) 2023년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Delta 56.4$ 조원, 2024년에는 $\Delta 30.8$ 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세입경정을 실시하고 않고, 주택도시기금 등 타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세출예산의 불용 등의 방법으로 대응

10)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국세수입을 정부안(382.4조원)보다 3.9조원 적은 378.5조원으로 전망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2024.10.28.).

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원, %)

		2024	2025	2026	2027	2028
국 가 채 무	2024 ~ 2028계획 (GDP대비, %)	1,195.8 (47.4)	1,273.3 ¹⁾ (48.1)	1,353.9 (49.1)	1,432.5 (49.8)	1,512.0 (50.5)
	2025년 제1회 추경 (GDP대비, %)	1,195.8 (47.4)	1,280.8 (48.4)	1,357.7 (49.2)	1,436.2 (50.0)	1,515.8 (50.6)
	2025년 제2회 추경(안) (GDP대비, %)	1,195.8 (47.4)	1,300.6 (49.0)	1,388.4 (50.3)	1,478.4 (51.4)	1,570.1 (52.5)
명목GDP(2024~2028계획) (변경)		2,520.5 2,556.9 ²⁾	2,646.5 2,654.0 ³⁾	2,759.5 2,759.5	2,875.0 2,875.0	2,993.0 2,993.0

주 1) 2025년 본예산 기준

2) 2024년 GDP 잠정치(한국은행)

3)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월)의 2025년 성장전망 수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 다음으로, 정부는 세입경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감액하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따라 교부하도록 편성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률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으나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보임.

「지방교부세법」¹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¹²⁾에 따르면 세입경정

11)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감액하여야 합니다만,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교부하기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감액하였음.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은 것은 2023년과 2024년 연속된 지방교부재원 미교부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려워진 점과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10.3조원), 지역사랑상품권(6,000억원) 등 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원의 세입경정 시 법정 배분 비율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 이를 별도로 구분계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각 근거법률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68%, 환경개선특별회계 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기후대응기금 7%로 각각 배분되도록 되어 있음.

이번 세입경정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제1회 추경 대비 1조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1,036억원(△7.3%) 감소한 14조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경우세입 감소에 상응해 법정전출금이 감액되어야 하는데, 법정전출금과 추가 전출금이 구분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임에도 법정전출금과 추가 전출금이 구분되지 않아 보통세처럼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액의 배분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은 별도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구분계리할 필요가 있음.

라. 추경안의 재원

- 정부는 총 30.5조원¹³⁾의 필요재원을 국채 발행 19.8조원(64.9%), 지출구조조정 5.3조원(17.3%), 외환평형기금 채권 축소 3조원(9.8%), 기금 여유자금 등 2.4조원(8.0%)으로 충당할 계획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재원]

(단위: 백만원, %)

항 목	재원 규모	비 중
국채 발행	19,823,774	64.9
지출구조조정	5,272,166	17.3
외평채 축소	3,000,000	9.8
기금 여유자금 등	2,449,157	8.0
합계	30,545,097	100.0

자료: 기획재정부

- 국채 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채 발행 22.7조원과 외평채 3조원 축소를 상계하여 추가 국채 발행 규모를 19.8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3조원의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채무의 질적 저하가 발생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추경안의 재원마련에 관한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세입경정을 포함한 30.5조원의 추경안 편성으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19.8조원으로 보임.

13) 세출확대 20.2조원 + 세입경정 10.3조원

그러나 실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발행수입을 보면, 이번 추경안으로 인한 국채 추가발행 규모는 22.7조원이며, 여기에서 원화표시 외평채 감축규모 3조원¹⁴⁾을 상계처리하여 추경안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는 19.8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임.

이는 추경편성으로 인해 추가 발행하여야 하는 국채 규모를 투명하게 전달하지 못하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를 22.7조원 발행하고 외평채 발행 규모를 3조원 축소하면, 금융성 채무가 3조원 감소하고 적자성 채무가 22.7조원 증가하게 됨.

국가채무 중 ‘외환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등 금융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현금자산 등의 대응자산이 있어 적자성 채무보다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반면,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결국 미래세대의 국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상환할 수밖에 없음.

14)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 축소: 16.7조원 → 13.7조원

최근 10년간의 국가채무의 성질별 변동 현황을 보면,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15년 44.1%에서 2024년 30.6%로 감소한 반면, 적자성 채무 비중은 55.9%에서 69.4%로 13.5%p 증가하였음.

특히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240.1조원에서 756.7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국가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도 40.6%에서 64.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2015~2024년 국가채무 성질별 변동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채무	591.5	626.9	660.2	680.5	723.2	846.6	970.7	1,067.7	1,126.7	1,175.2
(GDP 대비 %)	(34.0)	(34.2)	(34.1)	(33.9)	(35.4)	(41.1)	(43.7)	(45.9)	(46.9)	(46.1)
적자성 채무 (비중)	330.8 (55.9)	359.9 (57.4)	374.8 (56.8)	379.2 (55.7)	407.6 (56.4)	512.7 (60.6)	597.5 (61.6)	676.3 (63.3)	726.4 (64.5)	815.4 (69.4)
일반회계 적자보전 (비중)	240.1 (40.6)	271.3 (43.3)	289.6 (43.9)	300.4 (44.1)	334.7 (46.3)	437.5 (51.7)	523.1 (53.9)	605.8 (56.7)	660.1 (58.6)	756.7 (64.4)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비중)	90.7 (15.3)	88.6 (14.1)	85.1 (12.9)	78.8 (11.6)	72.9 (10.1)	75.2 (8.9)	74.4 (7.7)	70.5 (6.6)	66.3 (5.9)	58.7 (5.0)
금융성 채무 (비중)	260.6 (44.1)	267.0 (42.6)	285.4 (43.2)	301.3 (44.3)	315.6 (43.6)	333.9 (39.4)	373.2 (38.4)	391.3 (36.6)	400.3 (35.5)	359.8 (30.6)
외환시장 안정 (비중)	198.3 (33.5)	209.8 (33.5)	222.3 (33.7)	234.9 (34.5)	247.2 (34.2)	256.4 (30.3)	263.8 (27.2)	265.7 (24.9)	251.0 (22.3)	210.3 (17.9)
서민주거 안정 등 (비중)	62.3 (10.5)	57.2 (9.1)	63.1 (9.6)	66.4 (9.8)	68.5 (9.5)	77.5 (9.2)	109.3 (11.3)	125.6 (11.8)	149.4 (13.3)	149.5 (12.7)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추경안으로 인해 금융성 채무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규모 감소로 제1회 추경 대비 △2.8조원 감소하고, 적자성 채무는 적자국채 발행규모 증가로 22.6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71.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
□ 국가채무	1,126.8	1,195.8	1,175.2	1,273.3	1,280.8	1,300.6
○ 적자성 채무	726.4	792.3	815.4	879.5	900.9	923.5
(비중, %)	(64.5)	(66.3)	(69.4)	(69.1)	(70.3)	(71.0)
○ 금융성 채무	400.3	403.5	359.8	393.9	379.9	377.1
(비중, %)	(35.5)	(33.7)	(30.6)	(30.9)	(29.7)	(29.0)

자료: 기획재정부

- 또한, 19.8조원의 국채를 추가발행 시, 국채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68.5조원(43.2%) 증가하게 되는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연도별 국고채 발행규모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 국고채 발행규모는 2016년 101.1조원, 2017년 100.8조원, 2018년 97.4조원, 2019년 101.7조원으로 연간 100조원 내외의 규모였으나, 2020년 174.5조원, 2021년 180.5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감소 추세가 2024년까지 지속되었음.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당초 197.6조원이었으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9.5조원 증액됨에 따라 207.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48.7조원(30.7%) 증가한 수준임.

[2021~2025년 연도별 국채 발행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A)	2025년			(B-A)
					당초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B)	
◇ 총발행	180.5	168.6	165.7	158.4	197.6	207.1	226.9	68.5

주) 2025년은 발행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 수정」, 2025.5.7.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의 재원 조달을 위해 총 19.8조원의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전년 대비 국고채 발행규모는 68.5조원 증가하고 증가율은 43.2%로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 및 유사·연관사업 중 일부는 그동안의 추진 경과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투자지원사업 주요 유치국인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에서 관련 규정 미비 등 사유로 사업승인 및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연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024년 이월예산인 245억 8,600만원으로 2025년에 실행 가능성이

있는 투자 예상액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환경부의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내내역사업인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의 총사업비 및 국비지원 규모가 감액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도 본예산 171억 2,000만원 중 1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추경안의 감액을 반영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총사업비의 국비 지원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외교부의 ‘국가별 협력사업(ODA)’ 중 일부는 수원국의 정부조직 개편, 약정서 검토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입찰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이 감액(△230억원)되었는데, 그 외의 국가별 협력사업(ODA) 중 2025년 6월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들 또는 최근 무력충돌이 발생한 이란과 관련된 사업 등은 수원국의 현지사정 및 약정서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융자)’ 사업은 통합공공임대가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신규 사업승인 물량이 없어 불용예상액이 감액(△1,244억원)된 것인데, ‘행복주택 출자’사업의 경우에도 행복주택 물량 감소 및 LH의 미집행(상계대상) 출자금을 고려하여 신규 출자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출구조조정 사업 중 시설 구축사업과 ODA사업은 전체 사업 규모의 감축 없이 예산의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것이므로 실질

적인 지출구조조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예산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게 되면 총사업비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우려
가 있음.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감축 없이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회계/기금	세부사업	규모	지출구조조정
				총규모 대비 비중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국립묘지조성	△9,724	△0.18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중남미차관(융자)(ODA)	△8,000	△0.15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32,000	△0.61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60,000	△1.14
외교부	일반회계	베트남(ODA)	△5,000	△0.09
외교부	일반회계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000	△0.09
외교부	일반회계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000	△0.09
외교부	일반회계	탄자니아(ODA)	△8,000	△0.15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16,092	△0.3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신기술 융합 콘텐츠 산업육성	△5,000	△0.09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2,669	△0.24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000	△0.13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숙련기술장려사업	△9,189	△0.17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5,100	△0.48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남부내륙철도	△50,000	△0.95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월곶-판교 복선전철	△20,000	△0.38

(단위: 백만원, %)

소관	회계/기금	세부사업	규모	지출구조조정
				총규모 대비 비중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충북선 고속화	△9,957	△0.19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가덕도신공항건설	△522,364	△9.9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 유형별 검토

가. 경기 진작

-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제1회 추경 대비 15.2조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소비여력 보강에 11.3조원, 건설경기 활성화에 2.7조원, 신산업 분야 투자촉진에 1.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15개 부처 122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10.3조원)을 지급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철도·항만 등 SOC의 조기 착공 및 준공 지원(1.4조원)과 PF 지원(0.8조원)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며, 유망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0.9조원)과 AI·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0.3조원)할 계획임.

-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소비진작 및 경영안정 등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건전성 및 인플레이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2,96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소비진작·경영안정 등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신속히 이행하고 합리적인 사용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및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¹⁵⁾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정여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소득기준 상위 1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지표만으로 산정¹⁶⁾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자동차 등 자산을 포함하여 산정¹⁷⁾되므로 소득여건의 동일한 반영이 어렵고,¹⁸⁾ 1차 지급 후 2차 지급까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분할지급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증액 편성된 사업은 추가적인 예산 수요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지연되고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증액 편성된 경우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일반지원시설’, ‘시설유지관리’ 사업은 임시숙영시설 확대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15) 세계일보(2025.6.25.). 13조 ‘소비쿠폰’폴리먼 뽕뽕 언 내수 다시 살아날까?[뉴스+] (출처: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50625060324002>)

16)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 보수외소득월액×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율

17)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건강보험료율)+(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18) 가령, 직장가입자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배기량 1,600cc 이상의 자동차나 전·월세로 임차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보험료에 반영되고 있음

356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3년 평균 미집행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내실화 및 집행률 제고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교육부의 ‘국립대학 시설 보수’ 사업은 국립대학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9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현재 각 대학의 보수사업 예산 실행률이 11.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경 증액분이 연내에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6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남원매립정비 사업의 경우 아직 설계 단계이므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부는 기존 정책펀드의 결성 상황과 투자여력 및 추가적인 현금출자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민간재원을 충분히 조달하여 연내 사업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6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5년 본예산으로 조성 계획인 12개 자펀드가 모두 미결성 상황이고, 문화계정 내 기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개별 자펀드에서 대기 중인 금액이 2023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므로,¹⁹⁾ 기존 펀드의 결성 상황과 투자여력 등을 고려

19) 최근 5년간 문화계정의 결성규모 및 투자집행액을 살펴보면, 결성총액이 2020~2022년

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미분양 안심환매 및 PF 위기극복 특별보증을 위해 4,000억원이 HUG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성되었으나, HUG는 2024년 이후 현금·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약 6조원의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공적 보증공급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²⁰⁾ 추가적인 현금출자의 시급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2025년도 지원대상 물량으로 한정하여 재정소요를 재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¹⁾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2,400억원과 스케일업 펀드 1,600억원 총 4,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LP첫걸음펀드의 출자자 참여의향이 저조하고 연기금투자자의 대체투자자는 부동산에 기초한 리츠상품으로 이루어져 벤처투자가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벤처펀드 조성 시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자, 민간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민간재원 조달방안을

2,000억원대에서 2023년 4,486억원, 2024년 7,19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2020년에 2,118억원이었던 연간 투자집행액은 2024년에도 2,829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계속 2,000억원대에 그치고 있음.

20) 2025년 5월말 기준 HUG의 보증배수는 64.7배로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보증한도(90배) 보다 낮은 상황임.

21)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2025~2026년 2년간' 4,000호 매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추정안으로 산출하였으나 2025년 매입 가능한 물량 약 1,000호를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은 2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2,0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조원의 보증규모는 3년간의 목표치이므로 2025년 공급규모(약 4천억원)를 기준으로 재정소요를 재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정부는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확대 및 사업화 자금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 연계 및 성과평가 체계 마련 등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은 딥테크 분야 1,000개 이상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2025년 하반기 AX 스타트업 및 컨소시엄 등의 지원사업 종료 후 우수 기업에 대하여 2026년 후속 지원사업 연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계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각 부처로부터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수행하기 위해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부처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에 예산 투입을 통한 성과 도출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은 사업화 지원이 홍보 및 마케팅 중심의 간접적 지원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매출 창출 및 시장 진입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

성하고, 지원 이후 실제 시장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량화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민생 안정

-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제1회 추경 대비 5.0조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4조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6조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에 0.7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1.3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11개 부처 37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1.4조원)를 마련하여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인원을 확대(161.1→179.8만명, 1.3조원)하며, 전세임대 3천호 추가공급 등 취약계층 지원(0.6조원)하고, 지방채 인수(1.0조원)를 통해 지방재정을 보강하려는 계획임.

- 첫째, 정부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장기연체 채무 탕감 및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활능력 및 재기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사업은 배드뱅크 방식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장기연체 채무의 일괄 소각·감면을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면제·경감함으로써 차주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속히 경제력을 회복하도록 기여할 수 있고, 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처분하여 금융권의 건전성을 일부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 역시 제기되는 만큼, 채무 소각·감면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고용·복지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재기 지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0개월 동안 채권매입액 누적 실적이 9조 8,021억원으로 계획액 33조 4,000억원의 29.3%에 그치고 있으므로,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대상 차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금감면율을 상향하는 제도개편과 더불어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일부 사업은 지방비 부담, 미흡한 사업 계획,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80%(서울은 50%)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경을 통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구조인데, 지방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적시 지원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비 부담 가능 여

부 등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은 연 평균 대출건수의 3배가 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분할상환 수요가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정책자금 시스템의 개선 및 안정성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상환연장 심사·현장실사의 지체로 인해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국민취업제도 2유형 중 청년 추가지원을 위해 1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연내 7만 8,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말 기준 2유형 수급자격 인정자 수가 1만 8,512명에 불과하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 소관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 협의 필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내 준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부는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강화, 효율적인 추진 체계 구축 등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나, 2025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일부 운영기관에서는 모집인원이 0명에 해당하는 등 기존 운영기관의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의 내실화와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구직급여’ 사업은 60세 이상 수급자와 반복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구직급여의 목적과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률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지출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인력의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채불청산지원용자’ 사업은 근로자 용자를 받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여전히 채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임금채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주 용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용자 후 회수 및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넷째,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필요한 예산 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및 타 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사시설개선(용자)’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된 이차보전사업으로도 용자지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급여’ 사업은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금 누적적립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의료급여기금 누적적립금의 실질 가용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소관 ‘전세임대’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非아파트형 전세임대의 경우 2025년 본예산에서 처음 편성된 사업으로 입주자 모집 결과 청약률이 48.6% 수준에 불과하고, 전세임대 사업은 매년 기금운용계획변경 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유형별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심사보고자 : 이소영 위원)

1. 심사경과

-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지만 여야 간 일부 쟁점 사업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다만,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전체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심사보고 요지

-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

출한 30조 5,451억원의 추경안에 대하여 2조 3,721억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원을 감액하여 총 1조 2,463억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지원을 등을 조정하여 기존 10조 2,967억원에서 1조 8,742억원 증액하였음.

둘째,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기존 1조 1,378억원에서 1,050억원 증액하였음.

셋째,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을 증액하였음.

마지막으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네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105억원 증액하였음.

-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스물네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열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음.

그리고 복권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열두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음.

-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기회복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람.
- 마지막으로 열성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한병도 위원장님, 박형수 간사님,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국민의힘의 김대식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추경안등조정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용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별첨)과 동일

VI. 토론요지

생 략

VII. 수정안의 요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별첨)과 동일

VIII. 심사결과

수정 의결

IX. 새 비목설치 및 상임위 감액사업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 별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25. 7. 4.

<예산 및 기금 조정규모>

◇ 예산총계

(단위: 백만원)

	증액	감액	증감
□ 세 입	1,427,366	△43,527	1,383,839
□ 세 출	2,294,181	△910,342	1,383,839

주) 총계 기준

◇ 예산순계

(단위: 백만원)

	증액	감액	증감
□ 세 입	1,392,851	-	1,392,851
□ 세 출	2,259,666	△866,815	1,392,851

주)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기준

◇ 기금운용규모

(단위: 백만원)

	증액	감액	증감
□ 수 입	1,425,335	△361,711	1,063,624
□ 지 출	1,628,001	△564,377	1,063,624

주) 총계 기준

◇ 총수입

(단위: 백만원)

	증액	감액	증감
■ 예 산	-	-	-
■ 기 금	-	-	-
합 계	-	-	-

주) 총수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금융성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 내부거래 - 보전거래

◇ 총지출

(단위: 백만원)

	증액	감액	증감
■ 예 산	2,242,652	△706,815	1,535,837
■ 기 금	129,413	△419,000	△289,587
합 계	2,372,065	△1,125,815	1,246,250

주) 총지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금융성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 내부거래 - 보전거래

◇ 분야별 총지출 조정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조정내역		
	증액	감액	증감
1. 보건·복지·고용	26,707	△382,650	△355,943
2. 교 육	113,085	△39,185	73,900
3. 문화·체육·관광	10,514	△20,136	△9,622
4. 환 경	111,549	△10,891	100,658
5. R&D	7,000	-	7,00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9,295	△179,000	△169,705
7. SOC	20,332	△136,800	△116,468
8. 농림·수산·식품	135,512	-	135,512
9. 국 방	-	△90,523	△90,523
10. 외교·통일	2,000	△197,630	△195,630
11. 공공질서·안전	5,588	-	5,588
12. 일반·지방행정	1,894,883	-	1,894,883
합 계(총지출)	2,372,065	△1,125,815	1,246,250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규모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5년도			조정	수정안
	현재회	증감	변경안		
복권기금	8,868,492	-	8,868,492	-	8,868,492
공공자금관리기금	314,485,189	23,925,219	338,410,408	1,315,877	339,726,285
대외경제협력기금	2,352,735	△40,000	2,312,735	△40,000	2,272,735
기후대응기금	2,621,717	△17,000	2,604,717	△5,000	2,599,717
외국환평형기금	140,289,389	△3,000,000	137,289,389	-	137,289,389
국유재산관리기금	3,481,995	360	3,482,355	-	3,482,355
남북협력기금	1,443,848	△170,000	1,273,848	△150,000	1,123,848
국민체육진흥기금	3,037,194	1,012	3,038,206	-	3,038,206
문화예술진흥기금	577,659	-	577,659	-	577,659
관광진흥개발기금	1,714,181	-	1,714,181	-	1,714,181
영화발전기금	93,692	25,169	118,861	-	118,861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482,612	22,672	505,284	-	505,28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97,796	20,243	2,618,039	107,423	2,725,462
전력산업기반기금	3,875,157	3,495	3,878,652	624	3,879,276
국민건강증진기금	4,540,531	7,955	4,548,486	-	4,548,486
응급의료기금	640,061	-	640,061	-	640,061
고용보험기금	27,695,504	-	27,695,504	-	27,695,504
임금채권보장기금	914,227	-	914,227	-	914,22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3,418,118	-	23,418,118	-	23,418,118
주택도시기금	103,542,182	505,958	104,048,140	△50,600	103,997,540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2,059,453	650,000	12,709,453	△115,000	12,594,45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1,113,582	261,930	11,375,512	300	11,375,812
합 계	669,845,314	22,197,013	692,042,327	1,063,624	693,105,951

주) 총계 기준

◇ 기금수입계획변경안 수정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5년도			조정	수정안
	현계획	증감	변경안		
복권기금	7,764,511	-	7,764,511	-	7,764,511
공공자금관리기금	585,353	12,000	597,353	-	597,353
대외경제협력기금	354,062	-	354,062	-	354,062
기후대응기금	363,027	-	363,027	-	363,027
국유재산관리기금	2,042,888	-	2,042,888	-	2,042,888
남북협력기금	43,872	-	43,872	-	43,872
국민체육진흥기금	2,361,910	-	2,361,910	-	2,361,910
문화예술진흥기금	93,654	-	93,654	-	93,654
관광진흥개발기금	1,364,080	-	1,364,080	-	1,364,080
영화발전기금	2,607	25,169	27,776	-	27,776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341,612	-	341,612	-	341,61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60,763	-	2,360,763	-	2,360,763
전력산업기반기금	3,062,502	-	3,062,502	-	3,062,502
국민건강증진기금	3,251,684	-	3,251,684	-	3,251,684
응급의료기금	318,200	-	318,200	-	318,200
고용보험기금	21,306,816	-	21,306,816	-	21,306,816
임금채권보장기금	725,731	-	725,731	-	725,73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1,185,797	-	11,185,797	-	11,185,797
주택도시기금	25,901,421	-	25,901,421	-	25,901,42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486,742	-	5,486,742	-	5,486,74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734,718	△81,405	3,653,313	-	3,653,313
합 계	92,651,950	△44,236	92,607,714	-	92,607,714

주1) 총수입 기준

주2) 외국환평형기금은 총수입 제외

◇ 기금지출계획변경안 수정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5년도			조정	수정안
	현계획	증감	변경안		
복권기금	5,502,963	2,570	5,505,533	-	5,505,533
공공자금관리기금	25,331,430	1,272,874	26,604,304	15,579	26,619,883
대외경제협력기금	2,236,561	△40,000	2,196,561	△40,000	2,156,561
기후대응기금	2,325,279	△17,000	2,308,279	△5,000	2,303,279
국유재산관리기금	1,085,310	14,429	1,099,739	-	1,099,739
남북협력기금	800,777	△170,000	630,777	△150,000	480,777
국민체육진흥기금	1,678,621	△58,327	1,620,294	-	1,620,294
문화예술진흥기금	457,333	10,000	467,333	-	467,333
관광진흥개발기금	1,108,441	23,579	1,132,020	-	1,132,020
영화발전기금	68,755	27,100	95,855	400	96,255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289,554	22,400	311,954	-	311,95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89,650	20,000	2,209,650	106,134	2,315,784
전력산업기반기금	2,008,375	463,942	2,472,317	△52,000	2,420,317
국민건강증진기금	3,534,982	7,955	3,542,937	-	3,542,937
응급의료기금	307,309	1,762	309,071	-	309,071
고용보험기금	17,821,935	1,303,000	19,124,935	-	19,124,935
임금채권보장기금	779,331	8,129	787,460	-	787,46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024,151	15,000	10,039,151	-	10,039,151
주택도시기금	36,060,758	604,157	36,664,915	△50,000	36,614,915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729,066	650,000	7,379,066	△115,000	7,264,06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9,402,608	262,530	9,665,138	300	9,665,438
합 계	129,743,189	4,424,100	134,167,289	△289,587	133,877,702

주1) 총지출 기준

주2) 외국환평형기금은 총지출 제외

I.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수정규모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5년도			조정	수정안
	현계획	증감	변경안		
주택도시기금	103,542,182	505,958	104,048,140	△50,600	103,997,540

주) 총계 기준

2. 기금수입계획변경안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소 관	목명	2025년도			조정	비고
		현계획	증감	변경안		
국토교통부	기금예수금	-	220,000	220,000	△50,000	
	기금예탁이자수입	382,771	5,958	388,729	△600	
합계(총계)					△50,600	
총수입					-	

3. 기금지출계획변경안 조정내역

가. 감액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5년도			감액	비고
		현계획	증감	변경안		
국토교통부	미분양 안심환매(융자)	-	100,000	100,000	△50,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9,497,325	496,488	9,993,813	△50,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2,640	2,640	△600	
합계(총계)					△100,600	
총지출					△50,000	

나. 증액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5년도			증액	비고
		현계획	증감	변경안		
국토교통부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1,429,023	△537,432	20,891,591	50,000	
합계(총계)					50,000	
총지출					-	

Ⅱ. 기 타

1. 부대의견

국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1) 정부는 신속한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
- (2)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예산 집행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정부는 국가적 행사인 2025 APEC 정상회의와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4) 정부는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2026년 본예산 심의 전에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집행결과를 차년도 본예산 국회심사 시에 감안한다.
- (5) 정부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남부 내륙 철도 사업,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 (6) 정부는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7)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8)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에 따른 협의기구에 적극 참여·협력한다.
- (9)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4,000억원 규모 금융권 출연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협약기관의 범위, 채권 매입 후 소각 및 채무조정 세부요건, 도박·유홍 채무 등 지원 제외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 (10) 교육부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여 2026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주도의 자펀드 결성 시 시장의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위해 정부 출자 비율을 관리하고 운용사 평가·검증 절차와 투자 실패 시 사후 관리 장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 (12) 행정안전부는 상권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판매장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13)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따른 소득계층별 소비 증가 효과, 사용처 분석, 민생경제회복의 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엄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분석 근거 데이터를 국회에 보고한다.
- (14)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위탁업체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 등에 구체적인 사항(공모제, 타당성 검토 등)을 반영한다.

- (15)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많지 않은 읍·면에서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16) 문화체육관광부는 ACC와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 벨트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글로벌문화관광타운 조성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 (17) 문화체육관광부는 12·29여객기 참사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및 인접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숙박할인권 특별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18)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의 집행 이후 국산·수입산 제품 비율, 환급 대상자 소득분포, 구매제품 브랜드별 국적 통계 등을 포함한 사후 성과평가를 분석·공개한다.
- (19) 보건복지부는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메터 개발 및 실증(R&D) 사업이 사업 기간인 3년 이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과 집행관리를 면밀히 하도록 한다.
- (20)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 (21)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 이후 실제 고용시장 복귀 실적(수급 종료 후 6개월, 12개월 기준)을 추적·분석하고, 수급 중 재취업률에 대한 통계정보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22)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지원 사업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집중하고, 수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개

선방안을 마련한다.

- (23)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건설업종 실업자 대상 추가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훈련기관, 훈련과정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2026년 본예산 국회심사 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 (24)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조속하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도 부지공사 등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